

[사 건 명] 행심 2017 - 4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 □□□, △△△, ▽▽▽, ○○○은 ◎◎◎◎초등학교 ☆학년 학생으로, 2017. 9. 1. 발생한 같은 학교 ▷학년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2017. 9. 11.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가 개최되어, 그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7. 10.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들은 피해학생이 청구인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고 고의가 없었다.
-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청구인 5명 외에 다른 학생들도 같이 있었는데 청구인들만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다. 이 사건은 어린 아동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학교 폭력으로 판단하고 가해처분 조치한 것은 과중하다.
- 라. 피해학생은 신체적 피해가 없었고,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2017. 9. 17. 진술서(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서면 사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 마. 서면사과 처분이 향후 학생기록부에서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나이 어린 초등학생인 청구인들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들이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거나 공으로 등을 친 행위는 언어 폭력 및 신체폭력에 해당된다. 특히 이 사건은 ▷학년 대 ☆학년, 한명 대 다수라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 나. 학교 측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등에 공을 맞아 신체적 피해 및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 다. 수돗가에서는 청구인 5명 이외에도 여학생 2~3명과 남학생 3명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수돗가에서가 아닌 운동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학생이 운동장 쪽으로 두 차례나 자리를 옮겼음에도 청구인들이 쫓아가 욕설하고 흙을 발로 차고 공으로 등을 친 것이다. 당시 운동장에는 청구인들 외 여학생 1명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피해학생이 계속 앉아 있으면 괴롭힘을 당할까봐 도와주려고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하였고 이외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학교폭력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학폭위에 참석하여 청구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 측이 제출한 피해학생 어머니의 진술서(탄원서)는 학폭위 개최 후인 2017. 9. 17. 작성되었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및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7. 9. 1. 오후 12:40경 피해학생이 수돗가에서 공에 물과 흙을 묻히며 놀고 있자 그 공이 자신들의 공임을 알고 공을 돌려받고 공에 흙과 물을 묻힌 점에 대해 사과받기를 원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학생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공을 돌려주지 않고 운동장쪽으로 가자 피해학생을 따라가서 청구인 ▽▽▽은 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청구인 □□□과 청구인 ◇◇◇는 흙을 발로 차 피해학생의 입에 흙이 들어가게 하였으며, 청구인 ◇◇◇는 공으로 피해학생의 등을 쳤다. 청구인 △△△, ○○○은 기분 나쁜 말을 계속 하였다.

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피해학생으로부터 4학년 형들에게 목과 등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17에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성 여부

피청구인이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공으로 피해학생의 등을 치고 흠을 발로 차 피해학생의 입에 흠이 들어가게 한 것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탄원서)는 학폭위 개최 이후 작성, 제출되어 즉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종결하지 않고 학폭위를 개최한 것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그밖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청구인 □□□, 청구인 ◇◇◇가 흙을 발로 차 피해학생의 입에 흙이 들어가게 하고, 청구인 ◇◇◇가 공으로 피해학생의 등을 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청구인 ▽▽▽, △△△, ○○○은 비록 직접적, 신체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에게 동조하여 피해학생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은 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낮음(0점), 고의성 없음(0점), 반성정도 매우 높음(0점), 화해정도 매우 높음(0점)으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합계 1점에 해당하는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은 ☆학년 학생 5명이 ▷학년인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학년(저학년) 대 ☆학년(고학년), 1명 대 5명이라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폭위가 심각성에 관해 없음(0점)이 아닌 낮음(1점)으로 판단하여 합계 1점에 해당하는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들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